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43호 2020. 11. 2.(월)

선	기관의 장
람	

## 【조 례】

제1367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4
제1368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8
제1369호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1370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1371호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48
제1372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53
제1373호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1374호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1375호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2
제1376호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65
제1377호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71

## 【규 칙】

제587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75
-----------------------------------	----

## 【공 고】

제2020-2159호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92
제2020-2192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8

**【고 시】**

제2020-18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7
제2020-18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120
제2020-190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1
제2020-19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24
제2020-192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30
제2020-19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33
제2020-19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138
제2020-1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42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 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최,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 10.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조례 제1367호

###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뺀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의 제1항에 따른 적립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轉出)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공주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 10. 26.)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조례 제1368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읍·면·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세워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공고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2.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한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의 예산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2.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調停),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4.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 ①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위·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위원이 해촉 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 ③ 분과위원회는 2개 이상의 부서를 소관분야로 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의 분야를 담당한다.
-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 제2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 ④ 시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그 결과를 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
2.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지역위원회 직무 등) 지역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지역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지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 되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 제5장 보칙

제25조(민관협약기구 설치) ① 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약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관협약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민관협약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 10. 26.)에서 의결된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조례 제1369호

##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법령적합성 확보 및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8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제2조(「공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납부한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는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 날의 임대료로 한다.

제4조(「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때에는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사”를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때에는 전액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을 “(점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식 양양과”를 “의식을 드높이고”로 한다.

제8조(「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묘지·납골당”을 “묘지·봉안당”으로 하고, (별표3)호의 장려수당 지급표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장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 1.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 공주시 웅진문화 대상 (이하 “웅진문화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1. 2. (생 략) 3. 공주시에 <u>본적을</u> 두고 타지역 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특별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	제2조(수상대상)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등록기준지를</u> ----- ----- -----

## 2. 공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준용규정) ① (생 략) ② 용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u>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u>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 1.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p> <p>①·② (생 략)</p> <p>③ <u>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u></p> <p>1. <u>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 신청을 취소한 경우</u></p> <p>2. <u>임대기계 정비 등으로 임대계약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u></p> <p>&lt;신 설&gt;</p>	<p>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납부한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u></p> <p>1. <u>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p> <p>2. <u>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u></p> <p>3. <u>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u></p> <p>④ <u>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는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 날의 임대료로 한다.</u></p>

## 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p> <p>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p> <p>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p> <p>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 ----- 때에는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p> <p>3. ----- ----- -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p> <p>4. ----- ----- 때에는 전액반환</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p>

### 3.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li> <li>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p>

## 제3장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사용 규정 정비

### 1.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연에</u>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6. ----- ----- ----- ----- ----- ----- ----- <u>미리</u> ----- -----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 2.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u>의식 양양</u> 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공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의식을 드높이고</u> ----- ----- ----- -----.

##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u>묘지·납골당</u> 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 ----- ----- <u>묘지·봉안당</u> ----- ----- ----- -----.

###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현 행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240,000원
②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240,000원
③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월 180,000원
개 정 안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현행과 같음)	월 240,000원
② 공원묘지·봉안시설 등 ----- 봉안시설의----- -----	월 240,000원
③ 현행과 같음	월 180,000원



제8조 중 “토지정보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를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과”를 “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로, “산림경영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11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장 등) 센터와 상담소에 소장을 두며, 센터소장은 시장, 상담소장은 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을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3장제2절의 제목 “농업기술센터”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를 둔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를 둔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46명이며”를 “1,08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28명”을 “1,067명”으로 한다.

별표 1 ~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휴양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②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④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감사담당관”을 “정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한다.

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 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건축과장”으로 한다.

⑮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자치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⑲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보건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제7조제3항제3호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㉑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㉒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충남교향악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충남교향악단관련업무 국장과 충남교향악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㉓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㉕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⑥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강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

②⑦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②⑧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②⑨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③⑩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③⑪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전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

③⑫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허가팀장”을 “ 건축1팀장”으로 한다.

㉓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림경영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

㉔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를 “정수시설관리업무팀장”로 한다.

㉕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보건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필요시 지소를 둘 수 있다”를 지소는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로 한다.

㉘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1조 중 “기획담당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㉙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㉚ 공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①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세무과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을 “세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②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으로 한다.

④③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공 주 시 청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공주시 전역
직속 기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 전역
	남부상담소	공주시 이인면 구부내로 321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금학동
	북부상담소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35	유구읍, 사곡면, 신풍면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봉황로 123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	유구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	이인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	탄천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	계룡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	반포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종합사회복지관내)	의당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57	정안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	우성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	사곡면
	공주시 신풍보건지소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81-11	신풍면
구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	구계, 연종, 세동, 동해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추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추동1길 1	추계1·2,덕곡,문금,탑곡
	신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247-2	신흥1·2,오룡,초봉,주봉1·2,만수,운암
	대학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	대학1·2,운곡,견동,국동,유하
	덕지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	안영,덕지,화정,남산
	화현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	화현,경천,금대,상성,월곡,죽곡,향지
	왕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395	구왕,내흥
	양화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	양화1·2
	마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	마암
	상신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	상신,하신,온천1·2
	석장리 보건진료소	공주시 석장리길 88-35	석장리,무릉
	문천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	문천,내문,산성,월산
	장원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구역말길 90	장원1·2,운궁,고성,쌍달,석송
	모란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	상용,화봉1·2,전평,북계1·2,평정1·2,의당오인
	용봉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	용봉,죽당,안양,오동,봉현,보흥,어천,방흥
	귀산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문천길 19	귀산1·2,동곡,반촌,신용,내산1·2,한천,목천1·2
	운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	운암,회학,가교,월가,유룡,부곡
	대룡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새우재길 51	대룡,입동,용수,청흥,봉갑,조평,쌍대
	평소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평화길 152	평소,영정,선학,화흥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공주시 수원자공원길 131-21 (금학동)	공주시 전역

## 국장별 분장사무 (제7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시민자치 국 장	1	행정구역, 선거, 지역여론(동향), 민간협력, 교류협력, 국도정 주요시책,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복무, 행정능률, 공인,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명, 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교육 및 복지증진, 공무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해복구지원, 재해구호,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지역재난협력, 민방위대, 민방위 시설·장비, 안전시설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 지방분권, 각종 사회단체 관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 만들기(신규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지출, 회계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조달 등에 관한 사항
	8	관용차량관리, 재산(공유, 행정) 관리, 지방재정공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 신축·관리,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10	세무행정, 개별주택가격,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육경비 지원, 한마음장학회 운영, 평생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b>청소년 업무</b>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업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민원 총괄, 외국인 민원, 복합민원접수·분배, 민원제도 개선, 민원 시책 발굴, 컨택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문화복지 국 장	1	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사항
	2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 공예품 판매전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주시 시립합창단, 충남 교향악단,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단체 관리,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쌍신공원 축구장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정책, 관광지·관광자원·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단, 문화재보호, 문화재 학술·지표조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관리,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 후속대책, 고도보존 육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적지 관리, 석장리박물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복지기획, 국가보훈, 자원봉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연계, 자활, 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 기초연금, 요양보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포함), 장애인 복지, 복지시설, 장사업무(나래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10	여성친화, 양성평등정책, 인구 및 청년정책 총괄, 여성인력개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아동복지, 보육시설 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가축분뇨폐수시설처리 인허가 등 환경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경제도시 국 장	1	기업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중소기업 판로지원, 해외시장 개척, 노사협력, 에너지 유통관리, 전기공사업, 노동조합 관리, 노사안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고용촉진,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담배소매인 지정,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경제도시 국 장	4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 스마트 도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 인·허가, 신고, 주택행정, 건축과 관련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7	전문건설, 농촌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하천(금강) 및 공유수면 유지 관리, 하천골재 채취, 국가·소하천 유지관리, 공유수면 유지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교통정책, 교통행정,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 및 유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 관리, 운수지도, 대중교통체계개선, 공영 차고지 등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신설·유지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안전시설물(교량) 설치 유지(안전점검 포함)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로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시책 발굴, 조림사업, 임목벌채, 산림병해충, 채석단지, 사방댐, 산지사후관리, 산불예방, 임산물 생산기반 및 조성, 밤 가공 및 유통, 밤 6차 산업, 공원정비, 가로수 조성 및 조경사업 등에 관한 사항
12	수도행정, 상·하수도 정비, 지하수 보존 및 이용,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3]

**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장사무**(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농업기술 센터소장	1	농어촌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진흥자금, 농촌복지, 농지보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쌀생산 대책, 정부양곡,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 농업재해, 농기계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축산사업, 내수면 어업, 조사료 생산, 가축분뇨, 알밤한우 육성, 곤충사업, 축산지도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 동물보호 및 등록, 축산물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사업 종합기획·조정·평가, 농촌진흥기반조성, 농촌 진흥조직 역량강화, 농업인교육훈련, 학습단체 조직육성, 강소농 육성,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회관·농촌테마공원 운영, 도시농업육성, 도농교류사업, 농촌체험 및 농업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
	8	귀농귀촌인 종합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농업현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안정생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생산환경 진단 및 개선, 우량종자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정비·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원 활용 상품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 시범 및 창업교육,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지도 및 신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 보건소장 분장사무 (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건소장	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3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4	의약 및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14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의약·감염병·가족보건·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별표 5] 사업소장 분장사무 (제19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시설관리 사업소장	1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등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4	<b>환경성 건강센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b>
	5	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b>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 곰나루 야외공연장,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b>
	8	<b>그 밖의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b>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 정·정 무 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5조 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이내	28%이내	32%이내	24%이내	8%이상	1%이내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50% 이내	5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8]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6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b>총 계</b>	<b>1,085</b>	-				
<b>정무직 계</b>	<b>1</b>	<b>1</b>				
시장	1	1				
<b>일반직 계</b>	<b>1,039</b>	-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51	27	2	5	1	16
6급 이하 계	981	571	15	143	24	228
<b>별정직 계</b>	<b>2</b>	-				
6급 이하 계	2	2				
<b>연구직 계</b>	<b>10</b>	-				
연구관	-					
연구사	10	9		1		
<b>지도직 계</b>	<b>32</b>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b>전문경력관 계</b>	<b>1</b>	-				
나군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① (생략)</p> <p>② 직속기관의 장인 <u>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u>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농업기술센터 소장·보건소장</u> ----- ----- ----- -----.</p>
<p>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u>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u>을 둔다.</p>	<p>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u>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u>----- -----.</p>
<p>제7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자치국, <u>문화관광복지국</u>, 경제도시국을 두고, 각 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p>	<p>제7조(국의 설치) ----- ----- <u>문화복지국</u>----- ----- -----.</p>
<p>제8조(시민자치국에 두는 과) 시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주민공동체과, 회계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u>토지정보민원과</u>를 둔다.</p>	<p>제8조(시민자치국에 두는 과) --- ----- ----- ----- <u>민원토지과</u>----- -----.</p>
<p>제9조(<u>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u>) <u>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체육과</u>,</p>	<p>제9조(<u>문화복지국에 두는 과</u>) <u>문화복지국</u>-----</p>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10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경영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1조 (생 략)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과와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한다.

-----  
-----  
-----.

제10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  
----- 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 산림공원과-----  
-----.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소장 등) 센터와 상담소에 소장을 두며, 센터소장은 시장, 상담소장은 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항 삭제

제13조(소관사무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  
----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생략)

<신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제16조(소관사무 등) ① 농업기술 센터에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삭제>

제2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1조(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를 둔다.

제15조(소장)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치매정신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  
--.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p>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1,046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028명</u></p> <p>2. (생략)</p>	<p><u>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u></p> <p>제24조(정원의 총수) ----- ----- ----- <u>1,085명</u>이며----- -----.</p> <p>1. ----- <u>1,067명</u></p> <p>2.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 10.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조례 제1371호

###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공예 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 분야) 명장의 선정분야는 도자,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장의 선정)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2. 공고일 현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 또는 관내 공예 산업 관련 기업체·단체·조합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며 한 차례만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이 그 직분과 후진양성에 정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품 활동을 위한 국내외 교육, 연수, 세미나, 전시회 참여 등에 따른 소요경비
2. 후진 양성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 보조, 연구 개발비 등 소요경비
3. 그 밖에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등 공주시 공예발전에 이바지 한 경우 명장 선정연도 이후 5년이 되는 해마다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의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2항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명장활동비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공예·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명장을 홍보할 수 있으며 명장의 공예품을 우선 구매하여 시 홍보기념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의 공예품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공개금지 등) 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 10.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조례 제1372호

##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활동 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비치장소)**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용(專用) 이용공간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1조(목적) ----- <u>제6조제3항</u>----- ----- -----.</p> <p>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u>제13조제1항</u>----- -----.</p>

[별표]

<현 행>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스 충전 사업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b>2배 이상을 유지</b> 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재원능력	1. 개 인 -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10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 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액 화 석 유 가스 집 단 공급 사업	재원능력	1. 개 인 -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스의 판 매 사 업 및 충 전 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li> <li>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li> </ol>
	시설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 38㎡이상  가.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li> <li>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li> </ol>
	재원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 인 - 재산세 20만원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 가입)</li> <li>2. 법 인 - 자본금 3억원 이상</li> </ol>

[별표]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 스 충 전 사 업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u>2배 이상을 유지</u> 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액 화 석 유 가 스 의 판 매 사 업 및 충 전 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 38㎡이상 가.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생략)</p> <p>2. <u>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p> <p>②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안전산업국장</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 <u>경제도시국장</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공주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공주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 10.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조례 제1376호

### 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

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충청 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4.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 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개업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개업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 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팀 설치)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팀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 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개업수의사 등에게 구조·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경우 그 분양 또는 기증을 받는 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7조(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과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적절하게 선발·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 10. 26.)  
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조례 제1377호

###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공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공주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에 따라 공주시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기계약)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계약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장 제 비 기 준 표 (제7조와 관련)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m <sup>2</sup> 높이 3m이하	1식	
영구차	일반35인승이하	1대	1일간
헌화용꽃 및 근조리본 등 가.영정사진 나.헌화용국화 다.근조리본 라.장갑 마.넥타이 바.영구차리본	500mm× 700mm이하 소 흑 색 백 색 흑 색 〈삭제〉	1조 300송이 이하 300개 이하 40개 이하 40개 이하 1개	
조 화	3단조화	1개	의장명의
안내문 인쇄	A4용지	300부 이하	의회명의
장의행사 협조 방송설비		1식	필요시

2020년도 제13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0. 10. 14.)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11월 2일

공주시 규칙 제587호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3조에 따른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를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직은”을 “일직은 토요일 및”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7급이하)”를 “(7급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적지관리팀, 석장리박물관팀,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읍·면·동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는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한옥마을팀”을 “한옥마을팀, 휴양마을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보건소, 사적지관리팀, 종합사회복지관은 3시간 대기근무 실시, 동은 업무여건에 따라 동장이 대기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 담당관·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로,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휴일인”을 “토요일 및 공휴일의”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구분없”을 “구분 없”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시장·부시장·시민국장·예비군”을 “시장·부시장·시민자치국장·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재택근무자 점검 시 연락 두절, 근무지 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택근무자가 근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시 본청 당직감독관에게 통보받은 관리자는 지체 없이 재택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재택근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 본청 당직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비상연락체계도 및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③ 화재·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 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 ④ 동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무실 보안점검)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전 모든 사무실의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있을 경우 재택근무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 퇴근자에게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호 중 “무기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별지 서식은 다음의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보 안 점 검 표

구분 날짜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점검시간 및 점검자				결 재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시각	성명	시각	성명	담당자	팀장	과장								

- 비고 1. 서류보관상태 : 책상 위 서류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프린터·복사기·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별지 제2호서식】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 요일 ) 일 · 숙직(날씨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전 결						
당 직 자	구분	소속	직명	성명	서명	종류	문 서 처 리 상 황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사령											
	반장											
	반원											
	반원											
상황실												
운전원												
지시받은사항			조치사항			지시한사항		조치결과확인				
보고사항						인계사항						

##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서명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 기 관 별 당 직 사 항 기 록

기 관 명	당 직 보 고 확 인(1회)			당 직 보 고 확 인(2회)			
	시 간	1)당직자	2)확인자	시 간	당직자	확인자	특이사항기록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사적지관리							
도 서 관							
상수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휴 양 마 을							
한 옥 마 을							
위생매립장							
유 구 읍							
이 인 면							
탄 천 면							
계 룡 면							
반 포 면							
의 당 면							
정 안 면							
우 성 면							
사 곡 면							
신 풍 면							
중 학 동							
응 진 동							
금 학 동							
옥 룡 동							
신 관 동							
월 송 동							

- 1) 당직자는 기관별 당직자를
- 2) 확인자는 본청 당직자중 통화자를 기록함.

【별지 제3호서식】삭제

## 당직감독관근무일지

20 . . . ( 요일) 일 · 속직(날씨 )

담당자	팀장	담당관	부시장	시장	결 재

당 직 자	구분	소속	직명	성명	서명	순찰감사사항				
						순찰기관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성명	
당 직 자	사령								인	
	반장								인	
	반원								인	
	“								인	
	“								인	
	운전원								인	
지시받은사항			조 치 사 항			지 시 한 사 항				조 치 결 과 확 인
보고사항						인 계 사 항				

### 기관별 당직사항 기록

기관명	당직자	당 직 신고시간	순찰 계획	중요보고사항		특근자 현황	비고
				보고시간	보고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p>	<p>제3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u></p>
<p>제4조(당직의 구분) ① (생략)</p> <p>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p> <p>③ (생략)</p>	<p>제4조(당직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일직은 토요일 및 -----</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생략)</p> <p>② 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숙직근무시에는 당직반장이 제3조제1호 당직감독관의 임무를 겸임한다.</p> <p>1. 숙직</p> <p>가. (생략)</p> <p>나. <u>당직반원(7급이하) : 3명(1명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u></p>	<p>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7급 이하)</u> ----- ----- -----</p>

2. (생략)

③ (생략)

④ 「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반드시 일직을 실시한다. 다만, 사적운영팀, 문화시설사업소(웅진관), 동의 경우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고, 시립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일직을 두지 않으며, 법정공휴일(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은 재택일직을 실시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제4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중 숙직의 경우 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자원과(위생매립장), 상수도시설팀,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팀은 제외한다.

1. 2. (생략)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보건소, 사적운영팀, 종합사회복지관, 동은 3시간 대기근무 실시.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토요일 및 공휴일-----  
-. 다만, 사적지관리팀, 석장리 박물관팀, 웅진도서관팀, 기적의 도서관팀, 읍·면·동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는다.

⑤ -----  
-----  
-----  
----- 자원순환과-----  
-----  
----- 한옥마을팀, 휴양마을팀-----  
-----.

1. 2. (현행과 같음)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보건소, 사적지관리팀, 종합사회복지관은 3시간 대기근무 실시.

시립도서관과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② 소속 담당관·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근무종료시 당직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동은 업무여건에 따라 동장이 대기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  
-----  
-----  
-----  
-----  
----- 당직근무  
일의 변경승인-----.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  
-----  
-----  
----- 토요일 및  
공휴일-----  
-----.

② -----  
-----  
-----  
-----  
-----  
----- 토요일 및 공휴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 감독관은 모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숙직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이튿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 후반 구분 없이 모두가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생략)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생략)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이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국장·단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교대근무)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구분 없-----  
-----.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국장 -----  
-----  
-----

다음날 당직업무담당주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생략)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  
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부시  
장·시민국장·예비군 중대장에  
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속기관장, 사  
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급보  
하고, 시청 당직실에 보고)

2. (생략)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  
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  
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  
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  
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만,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상  
급보고나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  
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  
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

-----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시장·부시장·  
시민자치국장·예비군 -----  
-----  
-----  
-----

2. (현행과 같음)

③ -----  
-----  
-----  
----- 지체  
없-----  
-----.

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7조(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시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안의 행정기관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차례를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 근무 방법 등은 시장이 해당 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임무) ① 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서의 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 근무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지 비품) 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근무지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감독  
관 근무일지
2. 기관의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생략)

<신 설>

<신 설>

제26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제2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의거 재택근무자 점검 시 연락 두절, 근무지 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택근무자가 근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시분청 당직감독관에게 통보받은 관리자는 지체없이 재택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재택근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6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및 업무연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른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황파악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본청 당직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비상연락체계도 및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화재·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동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① (생략)
- ②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관리 부서에서 인수한 비품 및 전날 주요사항 등을 그날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

무자는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실 보안점검) 재택 당

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 내 모든 담당관·과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근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하여금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① (현행과 같음)
- ② 토요일 및 공휴일-----  
-----  
-----  
-----.

<삭 제>

제30조(사무실 보안점검) 재택당직

근무자는 퇴근 전 모든 사무실의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있을 경우 재택근무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p>제3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무기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li> </ol>	<p><u>한다.</u></p> <p>제36조(비상근무 제외자)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공무직근로자</u> -----</li> </ol>
---	--

## 공주시 공고 제2020 -2159호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1.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와 위안에 도움을 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제정 목적과 ‘공영장례지원’, ‘연고자’, ‘저소득층’ 용어를 정의함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 명시
-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자 등

□ “공영장례” 지원 내용(안 제6조)

○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수의, 상복, 병풍, 천막 등 장례용품

□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 ~ 2020. 11. 23.(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1. 2. ~ 2020. 11. 23.(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041-840-8154, FAX : 041-840-2310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 041-840-8154)
- 제출방법
  -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32552)
  - └ FAX : 041-840-2310

##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시신의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 하거나 꺼리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
6. 봉안당 안치료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장례용품을 지원할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의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래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조사·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래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업무 대행 비용 등이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래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공고 제2020-2192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의미가 불확실한 문구,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 급수설비의 철거, 직결급수의 시행 조항 등을 신설하였음
- 나. 특히, 조례 내용 중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9조 제1항)

- 급수공사설비 시공업체 조건을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자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자와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시공업자 범위를 확대

- 나. **공정경쟁 제한적 내용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안 제9조 제2항)**
- 공정경쟁 제한적 내용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으로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
- 다. **급수공사 대행, 급수설비의 철거, 직결급수의 시행 조항을 신설(안 제9조의2, 안 제19조의2, 안 제20조의2)**
- (급수공사 대행)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및 절차 규정
  - (급수설비의 철거) 불법설치 급수설비와 불필요한 급수설비에 대한 철거 및 그 잉여자재의 귀속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 (직결급수의 시행) 직결급수를 원하는 수도사용자의 신청 및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 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하는 기준 마련
- 라. **급수신청의 편의 증진, 공작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보완(안 제14조 제2항, 안 제19조제5항)**
- (편의 증진) 급수신청시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실효규정을 수도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수공사비의 납부 기한을 지정기일 이전에 당해 연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 (손해 책임)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하도록 책임 부과
- 마.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및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계량기 설치 위치 특정(안 제20조제2항)**
- 계량기 설치 위치를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하는 것으로 특정하였음
- 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보조사업 대상 확대(안 제41조제4항4호)**
-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보조사업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3. 입법예고기간: 2020. 11. 2. ~ 2020. 11. 22.(21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041-840-8611 / FAX: 041-840-2331

####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041-840-8611)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31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자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1호·2호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급수공사 대행)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보유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지정)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요와 공급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 기일 이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당해 연도 이내로 한다.

제19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20조 제2항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항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포함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lt;신 설&gt;</p>	<p>제9조(공사의 시행)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 ----- -----.</p> <p>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p> <p>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p> <p>② -----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급수공사 대행)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보유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지정)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요와 공급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p> <p>②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p>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 ① ~ ③ (생략)
-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3. (생략)

<신 설>

② -----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4.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가. 학교

##### 1)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학교	대학 (공주대학교신관캠퍼스)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356,777	-	356,777	'66.5.31	자연녹지

#### 2. 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1	-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356,777	-	356,777	'66.5.31.	
교육시설	-	문화체육관, 부설유치원 등		177,556	-	177,556		
운동시설	-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31,769	-	31,769		
공공시설	-	도로/주차장 등		55,378	-	55,378		
녹지시설	-	녹지/휴게시설		92,074	-	92,074		

#### 3.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시설명	위치	시설 결정면적	시설의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주대학교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356,777	합계	356,777	-	356,777	100.0	
			건축시설용지	177,556	-	177,556	49.77	
			운동시설용지	31,769	-	31,769	8.90	
			공공시설용지	55,378	-	55,378	15.52	
			녹지용지	92,074	-	92,074	25.81	

#### 4. 시설물 배치계획(변경)

구분	건물명		층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①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2(1)	2(1)	174.77	-	174.77	286.31	-	286.31
	은행사(여학생생활관)	은행사(여학생생활관)	4	4	969.48	-	969.48	3,856.32	-	3,856.32
	생활관창고	생활관창고	1	1	128.00	-	128.00	128.00	-	128.00
	대학본부	사범대학관	5(1)	5(1)	884.50	-	884.50	4,270.50	-	4,270.50
	제1과학교육관	제1과학교육관	3(1)	3(1)	834.00	-	834.00	2,514.80	-	2,514.80
	홍익사(남학생생활관)	홍익사(남학생생활관)	3	3	1,122.06	-	1,122.06	3,343.50	-	3,343.50
	생활관식당	학생생활관식당	1(1)	1(1)	907.50	-	907.50	1,834.00	-	1,834.00
	제2과학교육관	제2과학교육관	6(1)	6(1)	953.52	-	953.52	5,034.07	-	5,034.07
	특수문헌정보관	특수문헌정보관	4(1)	4(1)	1,239.64	-	1,239.64	5,190.63	-	5,190.63
	정문수위실	정문수위실	1	1	53.06	-	53.06	53.06	-	53.06
	목 공 실	목 공 실	1	1	155.52	-	155.52	155.52	-	155.52
	문 서 실	-	1	-	151.20	감)151.20	-	151.20	감)151.20	-
	해오름집(여학생생활관)	해오름집(여학생생활관)	5(2)	5(2)	1,178.21	-	1,178.21	5,582.95	-	5,582.95
	자연과학관	자연과학대학	4(1)	4(1)	2,716.06	-	2,716.06	11,190.83	-	11,190.83
	방사능계측실	방사능계측실	1	1	533.44	-	533.44	533.44	-	533.44
	유 리 온 실	유 리 온 실	1	1	163.80	-	163.80	163.80	-	163.80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소	1	1	57.60	감)22.60	35.00	57.60	감)22.60	35.00
	신축대학본부	대학본부	10(1)	10(1)	1,648.03	-	1,648.03	8,686.08	증)271.26	8,957.34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	7(1)	7(1)	1,500.00	감)136.24	1,363.76	9,900.00	감)1,035.75	8,864.25
	-	폐기물저장소	-	1	-	증)36.00	36.00	-	증)36.00	36.00
소계					15,370.39	감)274.04	15,096.35	62,932.61	감)902.29	62,030.32
②	본부창고	본부창고	1	1	191.50	-	191.50	191.50	-	191.50
	생활미술관	생활미술관	5	5	1,500.00	-	1,500.00	6,000.00	-	6,000.00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3	3	996.20	-	996.20	2,328.20	-	2,328.20
	학 군 단	학 군 단	2(1)	2(1)	452.90	-	452.90	933.80	-	933.80
	변 전 실	변 전 실	2	2	338.00	-	338.00	465.40	-	465.40
	산학연구관	산학연구관	5(1)	5(1)	1,741.33	-	1,741.33	8,369.16	-	8,369.16
	글로벌인재관	글로벌인재관	3(1)	3(1)	702.00	-	702.00	1,770.48	-	1,770.48
	공 장 동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 학생회실	1	1	396.00	-	396.00	396.00	-	396.00
	영상보건관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관	5(1)	5(1)	3,205.26	-	3,205.26	17,387.73	-	17,387.73

구분	건물명		층수		건축면적(m <sup>2</sup> )			연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조류사육장	조류사육장	1	1	185.76	-	185.76	185.76	-	185.76
	테니스장관리동	테니스장관리동	1	1	71.04	-	71.04	71.04	-	71.04
	사범6호관	사범2관	8(1)	8(1)	873.00	-	873.00	6,433.89	-	6,433.89
	연결복도	연결복도	2	2	49.95	-	49.95	49.95	-	49.95
	자동차실습동	주얼리디자인실기관	1	1	300.00	-	300.00	300.00	-	300.00
	실습동화장실	주얼리디자인실기관화장실	1	1	13.50	-	13.50	13.50	-	13.50
	조소실기실	조소실기실	1	1	99.00	-	99.00	99.00	-	99.00
	학군단창고	학군단창고	1	1	34.56	-	34.56	34.56	-	34.56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	5	5	823.07	-	823.07	3,994.00	-	3,994.00
	드림하우스	드림하우스	16(1)	16(1)	1,698.82	-	1,698.82	19,226.05	-	19,226.05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4(1)	4(1)	1,800.00	-	1,800.00	7,200.00	-	7,200.00
	재활용품분류장	재활용품분류장	1	1	180.00	감)40.00	140.00	180.00	감)40.00	140.00
	소계				15,651.89	감)40.00	15,611.89	75,630.02	감)40.00	75,590.02
③	입학취업관	교양관	3	3	948.40	증)19.65	968.05	2,844.20	증)49.76	2,893.96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6(1)	6(1)	1,695.81	-	1,695.81	9,319.08	-	9,319.08
	박물관	박물관	2	2	513.47	-	513.47	1,026.94	-	1,026.94
	헌혈의집	헌혈의집	2	2	180.97	-	180.97	248.00	-	248.00
	백제교육문화관	백제교육문화관	4(1)	4(1)	2,395.01	-	2,395.01	6,237.03	-	6,237.03
	웅비학생회관	웅비학생회관	5(1)	5(1)	2,101.32	-	2,101.32	6,048.73	-	6,048.73
	소계				7,834.98	증)19.65	7,854.63	25,723.98	증)49.76	25,773.74
④	체육관	체육관	2	2	1,194.70	증)238.24	1,432.94	1,800.30	증)338.66	2,138.96
	자료도서관	제2도서관	4	4	992.25	-	992.25	3,948.75	-	3,948.75
	사범교육관	사범1관	4	4	787.50	-	787.50	2,887.50	-	2,887.50
	외국어상업정보관	외국어상업정보관	3	3	630.05	-	630.05	1,890.15	-	1,890.15
	운동장본부석	운동장본부석	1	1	117.00	-	117.00	117.00	-	117.00
	교육정보관	교육정보관	4(1)	4(1)	466.86	-	466.86	1,730.64	-	1,730.64
	무용실습동	무용실습동	2	2	421.20	-	421.20	752.40	-	752.40
	기구보관실	기구보관실	1	1	72.00	-	72.00	72.00	-	72.00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	3(1)	3(1)	4,500.00	감)155.31	4,344.69	8,500.00	감)472.20	8,027.80
	소계				9,181.56	증)82.93	9,264.49	21,698.74	감)133.54	21,565.20
⑤	음악관	음악관	3	3	1,083.47	-	1,083.47	2,236.61	-	2,236.61
	무용관	무용관	3	3	442.40	-	442.40	1,027.60	-	1,027.60

구분	건물명		층수		건축면적(m <sup>2</sup> )			연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사범대창고	사범대창고	1	1	122.40	-	122.40	122.40	-	122.40
	인문사회관	인문사회과학대학관	5(1)	5(1)	2,884.11	-	2,884.11	12,602.14	-	12,602.14
	인사대차고	-	1	-	137.78	감)137.78	-	137.78	감)137.78	-
	예술관	예술관	8(1)	8(1)	2,000.00	-	2,000.00	15,000.00	-	15,000.00
	공주학연구원	공주학연구원	2	2	478.72	-	478.72	705.96	-	705.96
소계					7,148.88	감)137.78	7,011.10	31,832.49	감)137.78	31,694.71
⑥	한림사(교수아파트)	한림사(교수아파트)	2(1)	2(1)	260.10	-	260.10	520.20	-	520.20
	인사대수위실	인사대수위실	1	1	50.76	-	50.76	50.76	-	50.76
	비전하우스(A동)	비전하우스(A동)	18(1)	18(1)	430.53	-	430.53	8,415.34	-	8,415.34
	비전하우스(B동)	비전하우스(B동)	9	9	185.95	-	185.95	1,369.21	-	1,369.21
	기숙사증축	기숙사증축	10(1)	10(1)	2,000.00	-	2,000.00	18,000.00	-	18,000.00
	미래교육관	미래교육관	5(1)	5(1)	2,000.00	-	2,000.00	10,000.00	-	10,000.00
소계					4,927.34	-	4,927.34	38,355.51	-	38,355.51
⑦	공주국민체육센터	공주국민체육센터	2(1)	2(1)	1,182.16	-	1,182.16	2,005.67	-	2,005.67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	3(1)	3(1)	1,200.00	-	1,200.00	4,000.00	-	4,000.00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	4(1)	4(1)	1,800.00	-	1,800.00	7,200.00	-	7,200.00
	부설유치원	사범대학부설유치원	2	2	1,400.00	감)299.24	1,100.76	2,400.00	감)257.46	2,142.54
소계					5,582.16	감)299.24	5,282.92	15,605.67	감)257.46	15,348.21
합 계					65,697.20	감)648.48	65,048.72	271,779.02	감)1,421.31	270,357.71
건축면적					65,048.72m <sup>2</sup>					
연 면 적					270,357.71m <sup>2</sup>					
지하층 면적					21,863.47m <sup>2</sup>					
용적률산정 연면적					248,494.24m <sup>2</sup>					
건폐율	기 정		65,697.20 / 356,777*100 = 18.41% (법정 20%이하)							
	변 경		65,048.72 / 356,777*100 = 18.23% (법정 20%이하)							
용적률	기 정		249,690.01 / 356,777*100 = 69.98% (법정 80%이하)							
	변 경		248,494.24 / 356,777*100 = 69.65% (법정 80%이하)							

## 5. 세부 건축시설 계획(변경)

구분	명칭		층수		면적(㎡)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존 건물	입학취업관	교양관	1F	1F	948.40	967.46	행정실, 강의실, 우체국	행정실, 강의실, 우체국	변경 (명칭, 면적)
			2F	2F	947.90	963.25	강의실	강의실	
			3F	3F	947.90	963.25	행정실, 강의실	행정실, 강의실	
			소 계		2,844.20	2,893.96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지하1F	지하1F	18.36	18.36	기계실	기계실	변경없음
			1F	1F	174.77	174.77	생활관	생활관	
			2F	2F	93.18	93.18	"	"	
			소 계		286.31	286.31			
	본부창고	본부창고	1F	1F	191.50	191.50	창고	창고	변경없음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지하1F	지하1F	1,026.36	1,026.36	기계실, 변전실, 서고	기계실, 변전실, 서고	변경없음
			1F	1F	1,452.01	1,452.01	도서관	도서관	
			2F	2F	1,052.51	1,052.51	"	"	
			3F	3F	1,695.81	1,695.81	"	"	
			4F	4F	1,456.79	1,456.79	"	"	
			5F	5F	1,317.80	1,317.80	"	"	
			6F	6F	1,317.80	1,317.80	"	"	
	소 계		9,319.08	9,319.08					
	박물관	박물관	1F	1F	513.47	513.47	행정실, 박물관	행정실, 박물관	변경없음
			2F	2F	513.47	513.47	박물관	박물관	
			소 계		1,026.94	1,026.94			
체육관	체육관	1F	1F	1,194.70	1,329.00	체육관, 행정실	체육관, 행정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변경 (면적, 용도)	
		2F	2F	605.60	809.96	체육관, 연구실	체육관, 연구실		
		소 계		1,800.30	2,138.96				
백제교육 문화관	백제교육 문화관	지하1F	지하1F	873.38	873.38	기계실, 변전실	기계실, 변전실	변경없음	
		1F	1F	2,105.05	2,105.05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2F	2F	1,232.16	1,232.16	강의실, 국제회의실	강의실, 국제회의실		
		3F	3F	1,446.46	1,446.46	강의실, 행정실	강의실, 행정실		
		4F	4F	579.98	579.98	강의실, 교수학습센터	강의실, 교수학습센터		
소 계		6,237.03	6,237.03						
자료도서관	제2도서관	1F	1F	972.00	972.00	부속시설(제1종근린생활 시설), 도서관, 행정실	부속시설(제1종근린생활 시설), 도서관, 행정실	변경 (명칭)	
		2F	2F	992.25	992.25	도서관	도서관		
		3F	3F	992.25	992.25	"	"		
		4F	4F	992.25	992.25	"	"		
		소 계		3,948.75	3,948.75				
생활미술관	생활미술관	1F	1F	958.65	958.65	강의실, 실험실	강의실, 실험실	변경없음	
		2F	2F	938.40	938.40	"	"		
		3F	3F	938.40	938.40	"	"		
		4F	4F	137.15	137.15	"	"		
		소 계		2,972.60	2,972.60				

구분	명칭		층수		면적(m <sup>2</sup> )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존 건물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1F	1F	996.20	996.20	식당	식당	변경없음
			2F	2F	666.00	666.00	동아리실	동아리실	
			3F	3F	666.00	666.00	"	"	
			소 계		2,328.20	2,328.20			
	사범교육관	사범1관	1F	1F	787.50	787.50	강의실, 행정실	강의실, 행정실	변경 (명칭)
			2F	2F	775.00	775.00	강의실	강의실	
			3F	3F	775.00	775.00	"	"	
			4F	4F	550.00	550.00	"	"	
			소 계		2,887.50	2,887.50			
	생활관 창고	생활관 창고	1F	1F	128.00	128.00	창고	창고	변경없음
	은행사 (여학생 생활관)	은행사 (여학생 생활관)	1F	1F	969.48	969.48	기숙사, 행정실	기숙사, 행정실	변경없음
			2F	2F	962.28	962.28	기숙사	기숙사	
			3F	3F	962.28	962.28	"	"	
			4F	4F	962.28	962.28	"	"	
			소 계		3,856.32	3,856.32			
	대학본부	사범2관	지하1F	지하1F	364.00	364.00	기계실, 변전실	기계실, 변전실	변경 (명칭)
			1F	1F	884.50	884.50	행정실	행정실	
			2F	2F	842.50	842.50	"	"	
			3F	3F	842.50	842.50	"	"	
			4F	4F	668.50	668.50	연구실	연구실	
			5F	5F	668.50	668.50	연구실	연구실	
			소 계		4,270.50	4,270.50			
	음악관	음악관	1F	1F	1,083.47	1,083.47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변경없음
			2F	2F	694.52	694.52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3F	3F	458.62	458.62	"	"	
			소 계		2,236.61	2,236.61			
	무용관	무용관	1F	1F	442.40	442.40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변경없음
2F			2F	442.40	442.40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3F			3F	142.80	142.80	"	"		
소 계			1,027.60	1,027.60					
학군단	학군단	지하1F	지하1F	46.20	46.20	학군단	학군단	변경없음	
		1F	1F	452.90	452.90	"	"		
		2F	2F	434.70	434.70	"	"		
		소 계		933.80	933.80				
외국어상 업정보관	외국어상 업정보관	1F	1F	630.05	630.05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변경없음	
		2F	2F	630.05	630.05	"	"		
		3F	3F	630.05	630.05	"	"		
		소 계		1,890.15	1,890.15				
운동장 본부석	운동장 본부석	1F	1F	117.00	117.00	운동기구 창고	운동기구 창고	변경없음	
제1과학 교육관	제1과학 교육관	지하1F	지하1F	60.80	60.80	기계실, 변전실	기계실, 변전실	변경없음	
		1F	1F	834.00	834.00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2F	810.00	810.00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3F	3F	810.00	810.00	"	"		
		소 계		2,514.80	2,514.80				
변전실	변전실	1F	1F	338.00	338.00	변전실	변전실	변경없음	
		2F	2F	127.40	127.40	"	"		
		소 계		465.40	465.40				

구분	명칭		층수		면적(m <sup>2</sup> )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존 건물	홍익사 (남학생 생활관)	홍익사 (남학생 생활관)	1F	1F	1,122.06	1,122.06	기숙사	기숙사	변경없음
			2F	2F	1,110.72	1,110.72	"	"	
			3F	3F	1,110.72	1,110.72	"	"	
			소 계		3,343.50	3,343.50			
	생활관식당	학생생활관 식당	지하1F	지하1F	926.50	926.50	기계실	기계실	변경 (명칭)
			1F	1F	907.50	907.50	식당	식당	
			소 계		1,834.00	1,834.00			
	산학연구원	산학연구원	지하1F	지하1F	1,562.94	1,562.94	기계실, 변전실	기계실, 변전실	변경없음
			1F	1F	1,741.33	1,741.33	산학연구실	산학연구실	
			2F	2F	1,311.62	1,311.62	"	"	
			3F	3F	1,445.49	1,445.49	"	"	
			4F	4F	1,463.31	1,463.31	"	"	
			5F	5F	844.47	844.47	"	"	
	소 계		8,369.16	8,369.16					
	제2과학 교육관	제2과학 교육관	지하1F	지하1F	247.76	247.76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953.52	953.52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2F	923.52	923.52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3F	3F	923.52	923.52	강의실습실, 연구실	강의실습실, 연구실	
			4F	4F	923.52	923.52	"	"	
			5F	5F	923.52	923.52	"	"	
			6F	6F	138.71	138.71	"	"	
소 계		5,034.07	5,034.07						
글로벌 인재관	글로벌 인재관	지하1F	지하1F	288.00	288.00	기계실	기계실	변경없음	
		1F	1F	702.00	702.00	행정실	행정실		
		2F	2F	540.00	540.00	고시원	고시원		
		3F	3F	240.48	240.48	학생회실	학생회실		
		소 계		1,770.48	1,770.48				
특수문헌 정보관	특수문헌 정보관	지하1F	지하1F	316.07	316.07	강의실, 기계실	강의실, 기계실	변경없음	
		1F	1F	1,239.64	1,239.64	행정실, 연구실, 강의실	행정실, 연구실, 강의실		
		2F	2F	1,211.64	1,211.64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3F	3F	1,211.64	1,211.64	"	"		
		4F	4F	1,211.64	1,211.64	"	"		
소 계		5,190.63	5,190.63						
정문수위실	정문수위실	1F	1F	53.06	53.06	수위실	수위실	변경없음	
목공실	목공실	1F	1F	155.52	155.52	목공실	목공실	변경없음	
공장동	간호보건대학 · 예술대학 학생회실	1F	1F	396.00	396.00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변경 (명칭)	
사범대창고	사범대창고	1F	1F	122.40	122.40	창고	창고	변경없음	
문서실	-	1F	-	151.20	-	문서실	-	변경(멸실)	
해오름집 (여학생 생활관)	해오름집 (여학생 생활관)	지하2F	지하2F	557.93	557.93	기계실, 기숙사	기계실, 기숙사	변경없음	
		지하1F	지하1F	623.57	623.57	기숙사	기숙사		
		1F	1F	1,047.35	1,047.35	행정실, 기숙사	행정실, 기숙사		
		2F	2F	1,119.45	1,119.45	기숙사	기숙사		
		3F	3F	1,119.45	1,119.45	"	"		
		4F	4F	601.34	601.34	"	"		
		5F	5F	513.86	513.86	"	"		
소 계		5,582.95	5,582.95						
방사능계측실	방사능계측실	1F	1F	533.44	533.44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	변경없음	
유리온실	유리온실	1F	1F	163.80	163.80			변경없음	

구분	명칭		층수		면적(㎡)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존 건물	자연과학관	자연과학대학	지하1F	지하1F	802.89	802.89	기계실, 강의실	기계실, 강의실	변경 (명칭)
			1F	1F	2,415.93	2,415.93	행정실, 연구실, 강의실	행정실, 연구실, 강의실	
			2F	2F	2,539.89	2,539.89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3F	3F	2,716.06	2,716.06	"	"	
			4F	4F	2,716.06	2,716.06	"	"	
			소 계		11,190.83	11,190.83			
	영상보건관	간호보건대학 · 예술대학관	지하1F	지하1F	1,587.15	1,587.15	기계실, 강의실	기계실, 강의실	변경 (명칭)
			1F	1F	2,979.54	2,979.54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2F	2F	3,205.26	3,205.26	"	"	
			3F	3F	3,205.26	3,205.26	"	"	
			4F	4F	3,205.26	3,205.26	"	"	
			5F	5F	3,205.26	3,205.26	"	"	
	소 계		17,387.73	17,387.73					
	교육정보관	교육정보관	지하1F	지하1F	23.40	23.40	창고	창고	변경없음
			1F	1F	416.16	416.16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2F	2F	466.86	466.86	"	"	
			3F	3F	412.11	412.11	"	"	
			4F	4F	412.11	412.11	"	"	
			소 계		1,730.64	1,730.64			
	무용실습동	무용실습동	1F	1F	331.20	331.20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변경없음
			2F	2F	421.20	421.20	"	"	
소 계				752.4	752.4				
인문사회관	인문사회과학 대학관	지하1F	지하1F	1,979.47	1,979.47	기계실, 학회실	기계실, 학회실,	변경 (명칭, 용도)	
		1F	1F	2,884.11	2,884.11	행정실, 강의실	행정실, 강의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F	2F	2,759.56	2,759.56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3F	3F	1,867.11	1,867.11	"	"		
		4F	4F	1,874.72	1,874.72	"	"		
		5F	5F	1,237.17	1,237.17	"	"		
		소 계		12,602.14	12,602.14				
한림사 (교수 아파트)	한림사 (교수 아파트)	지하1F	지하1F	27.00	27.00	기계실	기계실	변경없음	
		1F	1F	260.10	260.10	기숙사	기숙사		
		2F	2F	233.10	233.10	기숙사	기숙사		
		소 계		520.2	520.2				
조류사육장	조류사육장	1F	1F	185.76	185.76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	변경없음	
테니스장 관리동	테니스장 관리동	1F	1F	71.04	71.04	관리실	관리실	변경없음	
인사대 수위실	인사대 수위실	1F	1F	50.76	50.76	수위실	수위실	변경없음	
인사대 차고	-	1F	-	137.78	-	차고	-	변경(멸실)	
사범6호관	사범2관	지하1F	지하1F	186.66	186.66	기계실	기계실	변경 (명칭)	
		1F	1F	504.99	504.99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2F	2F	873.00	873.00	"	"		
		3F	3F	873.00	873.00	"	"		
		4F	4F	873.00	873.00	"	"		
		5F	5F	873.00	873.00	"	"		
		6F	6F	873.00	873.00	"	"		
		7F	7F	873.00	873.00	"	"		
		8F	8F	504.24	504.24	"	"		
		소 계		6,433.89	6,433.89				

구분	명칭		층수		면적(m <sup>2</sup> )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존 건물	연결복도	연결복도	2F	2F	49.95	49.95	복도	복도	변경없음
	자동차 실습동	주얼리디자인 실기관	1F	1F	300.00	300.00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	변경 (명칭)
	실습동 화장실	주얼리디자인 인실기관화 장실	1F	1F	13.50	13.50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샤워실	변경 (명칭)
	공주국민 체육센터	공주국민 체육센터	지하1F	지하1F	357.73	357.73	기계실, 강의실	기계실, 강의실	변경없음
			1F	1F	1,182.16	1,182.16	행정실, 수영장	행정실, 수영장	
			2F	2F	465.78	465.78	헬스장, 강의실	헬스장, 강의실	
			소 계		2,005.67	2,005.67			
	조소실기실	조소실기실	1F	1F	99.00	99.00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변경없음
	학군단 창고	학군단 창고	1F	1F	34.56	34.56	창고	창고	변경없음
	비전하우스 (A동)	비전하우스 (A동)	지하1F	지하1F	1,675.31	1,675.31	기계실, 식당	기계실, 식당	변경없음
			1F	1F	331.64	331.64	행정실, 도서실, 헬스장	행정실, 도서실, 헬스장	
			2F	2F	388.67	388.67	기숙사	기숙사	
			3F	3F	388.67	388.67	"	"	
			4F	4F	388.67	388.67	"	"	
			5F	5F	388.67	388.67	"	"	
			6F	6F	388.67	388.67	"	"	
			7F	7F	388.67	388.67	"	"	
			8F	8F	388.67	388.67	"	"	
			9F	9F	388.67	388.67	"	"	
			10F	10F	388.67	388.67	"	"	
11F			11F	388.67	388.67	"	"		
12F			12F	388.67	388.67	"	"		
13F			13F	388.67	388.67	"	"		
14F			14F	388.67	388.67	"	"		
15F			15F	388.67	388.67	"	"		
16F			16F	312.11	312.11	"	"		
17F			17F	312.11	312.11	"	"		
18F			18F	342.79	342.79	부속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속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소 계		8,415.34	8,415.34						
비전하우스 (B동)	비전하우스 (B동)	1F	1F	149.37	149.37	행정실	행정실	변경없음	
		2F	2F	152.48	152.48	기숙사	기숙사		
		3F	3F	152.48	152.48	"	"		
		4F	4F	152.48	152.48	"	"		
		5F	5F	152.48	152.48	"	"		
		6F	6F	152.48	152.48	"	"		
		7F	7F	152.48	152.48	"	"		
		8F	8F	152.48	152.48	"	"		
		9F	9F	152.48	152.48	"	"		
소 계		1,369.21	1,369.21						
헌혈의집	헌혈의집	1F	1F	116.91	116.91	체혈실	체혈실	변경없음	
		2F	2F	131.09	131.09	행정실	행정실		
		소 계		248.00	248.00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	1F	1F	348.61	348.61	은행	은행	변경없음	
		2F	2F	662.37	662.37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소 계		1,010.98	1,010.98				
기구보관실	기구보관실	1F	1F	72.00	72.00	기구보관실	기구보관실	변경없음	
위험물저장소	-	1F	-	57.60	-			변경(철거)	

구분	명칭		층수		면적(m <sup>2</sup> )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존 건물	드림하우스 (BTL학생 생활관)	드림하우스 (BTL학생 생활관)	지하1F	지하1F	1,722.74	1,722.74	행정실, 기계실, 전기실	행정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1,361.25	1,361.25	구내식당	구내식당	
			2F	2F	1,568.61	1,568.61	기숙사	기숙사	
			3F	3F	1,539.03	1,539.03	"	"	
			4F	4F	1,526.22	1,526.22	"	"	
			5F	5F	1,526.22	1,526.22	"	"	
			6F	6F	1,526.22	1,526.22	"	"	
			7F	7F	1,539.03	1,539.03	"	"	
			8F	8F	1,539.03	1,539.03	"	"	
			9F	9F	1,526.22	1,526.22	"	"	
			10F	10F	543.53	543.53	"	"	
			11F	11F	543.53	543.53	"	"	
			12F	12F	543.53	543.53	"	"	
			13F	13F	556.34	556.34	"	"	
			14F	14F	554.85	554.85	"	"	
			15F	15F	554.85	554.85	"	"	
			16F	16F	554.85	554.85	"	"	
		소 계		19,226.05	19,226.05				
기존 건물	웅비 학생회관	웅비 학생회관	지하1F	지하1F	352.56	352.56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1,823.31	1,823.31	행정실,매점,보건진료소,동아리실,제1종근린생활시설	행정실,매점,보건진료소,동아리실,제1종근린생활시설	
			2F	2F	1,348.87	1,348.87	판매시설, 행정실	판매시설, 행정실	
			3F	3F	1,203.98	1,203.98	동아리실	동아리실	
			4F	4F	864.50	864.50	동아리실	동아리실	
			5F	5F	455.51	455.51	동아리실, 신문방송국	동아리실, 신문방송국	
					소 계		6,048.73	6,048.73	
재활용품 분류장	재활용품 분류장	1F	1F	180.00	140.00	재활용품 분류장	재활용품 분류장	변경 (면적)	
				소 계		180.00	140.00		
신축 대학본부	대학본부	지하1F	지하1F	512.23	512.23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 (명칭 면적)	
		1F	1F	1,399.74	1,449.17	행정실, 국제회의실	행정실, 국제회의실		
		2F	2F	1,114.95	1,286.23	행정실, 학생서비스센터	행정실, 학생서비스센터		
		3F	3F	495.54	546.09	행정실, 대회의실	행정실, 대회의실		
		4F	4F	737.66	737.66	행정실	행정실		
		5F	5F	737.66	737.66	"	"		
		6F	6F	737.66	737.66	"	"		
		7F	7F	737.66	737.66	"	"		
		8F	8F	737.66	737.66	"	"		
		9F	9F	737.66	737.66	"	"		
		10F	10F	737.66	737.66	"	"		
				소 계		8,686.08	8,957.34		

구분	명칭		층수		면적(m <sup>2</sup> )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존 건물	공주학연구원	공주학연구원	1F	1F	406.98	406.98	행정실, 연구실	행정실, 연구실	변경없음
			2F	2F	298.98	298.98	연구실	연구실	
			소 계		705.96	705.96			
	세종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세종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지하1F	지하1F	1,000.00	831.82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변경 (면적)
			1F	1F	800.00	714.56	강의실	강의실	
			2F	2F	1,400.00	1,253.20	"	"	
			3F	3F	1,400.00	1,239.17	"	"	
			4F	4F	1,400.00	1,278.45	"	"	
			5F	5F	1,400.00	1,255.28	"	"	
			6F	6F	1,400.00	1,293.44	"	"	
			7F	7F	1,100.00	998.33	"	"	
	소 계		9,900.00	8,919.42					
	부설유치원	사범대학부설 유치원	-	지하1F	-	79.38			변경 (명칭, 면적)
			1F	1F	1,400.00	1,072.71	행정실, 교실, 식당	행정실, 교실, 식당	
			2F	2F	1,000.00	990.45	행정실, 교실, 도서실, 강당	행정실, 교실, 도서실, 강당	
			소 계		2,400.00	2,142.54			
	국제교육원 증축	국제교육원 증축	1F	1F	348.61	348.61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변경없음
			2F	2F	662.37	662.37	"	"	
			3F	3F	994.00	994.00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4F	4F	994.00	994.00	"	"	
5F			5F	995.02	995.02	"	"		
소 계			3,994.00	3,994.00					
생활미술관 증축	생활미술관 증축	1F	1F	541.40	541.40	연구실, 강의실습실	연구실, 강의실습실	변경없음	
		2F-4F	2F-4F	1,623.00	1,623.00	"	"		
		5F	5F	863.00	863.00	"	"		
		소 계		3,027.40	3,027.40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	지하1F	지하1F	1,600.00	1,463.26	기계실, 체조실	기계실, 체조실	변경 (면적)	
		1F	1F	3,400.00	3,129.77	경기장, 강의실습실	경기장, 강의실습실		
		2F	2F	2,200.00	2,163.35	강의실, 관람석, 연구실	강의실, 관람석, 연구실		
		3F	3F	1,300.00	1,271.42	연구실, 행정실, 다목적실	연구실, 행정실, 다목적실		
		소 계		8,500.00	8,027.80				
계획 건물	기숙사 증축	기숙사 증축	지하1F	지하1F	700.00	700.00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2,000.00	2,000.00	행정실, 도서실	행정실, 도서실	
			2F	2F	1,700.00	1,700.00	기숙사	기숙사	
			3F	3F	1,700.00	1,700.00	"	"	
			4F	4F	1,700.00	1,700.00	"	"	
			5F	5F	1,700.00	1,700.00	"	"	
			6F	6F	1,700.00	1,700.00	"	"	
			7F	7F	1,700.00	1,700.00	"	"	
			8F	8F	1,700.00	1,700.00	"	"	
			9F	9F	1,700.00	1,700.00	"	"	
			10F	10F	1,700.00	1,700.00	"	"	
			소 계		18,000.00	18,000.00			

구분	명칭		층수		면적(㎡)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획 건물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	지하1F	지하1F	450.00	450.00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1,800.00	1,800.00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2F	1,650.00	1,650.00	연구실, 강의실습실	연구실, 강의실습실	
			3F	3F	1,650.00	1,650.00	"	"	
			4F	4F	1,650.00	1,650.00	"	"	
			소 계		7,200.00	7,200.00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	지하1F	지하1F	400.00	400.00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1,200.00	1,200.00	전산실	전산실	
			2F	2F	1,200.00	1,200.00	"	"	
			3F	3F	1,200.00	1,200.00	"	"	
			소 계		4,000.00	4,000.00			
	미래교육관	미래교육관	지하1F	지하1F	600.00	600.00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2,000.00	2,000.00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2F	2F	1,850.00	1,850.00	"	"	
			3F	3F	1,850.00	1,850.00	"	"	
			4F	4F	1,850.00	1,850.00	"	"	
			5F	5F	1,850.00	1,850.00	"	"	
	소 계		10,000.00	10,000.00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하1F	지하1F	450.00	450.00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1,800.00	1,800.00	행정실, 연구실	행정실, 연구실	
			2F	2F	1,650.00	1,650.00	연구실, 실험실	연구실, 실험실	
			3F	3F	1,650.00	1,650.00	"	"	
			4F	4F	1,650.00	1,650.00	"	"	
			소 계		7,200.00	7,200.00			
	예술관	예술관	지하1F	지하1F	750.00	750.00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변경없음
			1F	1F	2,000.00	2,000.00	행정실, 강의실습실	행정실, 강의실습실	
			2F	2F	1,750.00	1,750.00	강의실습실	강의실습실	
3F			3F	1,750.00	1,750.00	"	"		
4F			4F	1,750.00	1,750.00	"	"		
5F			5F	1,750.00	1,750.00	"	"		
6F			6F	1,750.00	1,750.00	"	"		
7F			7F	1,750.00	1,750.00	"	"		
8F			8F	1,750.00	1,750.00	"	"		
소 계		15,000.00	15,000.00						
-	위험물저장소	-	1F	-	35.00	-	위험물저장소	증축	
-	폐기물저장소	-	1F	-	36.00	-	폐기물저장소	증축	
합 계		연 면 적		271,779.02	270,357.71				
		지하면적		22,089.01	21,863.47				
		용적률 적용		249,690.01	248,494.24				

공주시 고시 제2020-189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 제 내 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k㎡)		
유구천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 신평면 동원리	침수위험	나	1.87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재해위험요소 해소)	2006.3.2

붙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현황도면 : 1부(시민안전과 비치)

2020년 11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시 제2020-190호

##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신관동 24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유수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시민안전과(☎041-840-86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일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5,000) : 게재생략
3.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도 (1/1,500) : 게재생략

#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 도로	912	대로3-6	대로3-5	일반 도로		85.12.28	
변경	대로	3	7	25	주간선 도로	912	대로3-6	대로3-5	일반 도로		85.12.28	유수지 (연장42m), 주차장 (연장42m), 중복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7	대로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결정</li> <li>- 유수지 : 연장42m</li> <li>- 주차장 : 연장4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수지 및 주차장과의 중복결정으로 인한 변경</li> </ul>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나	노외 주차장	신관동 244 일원	-	증) 4,374	4,374		유수지 (4,374㎡), 도로 (1,086㎡) 중복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나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외주차장 신설</li> <li>- 면적 : 4,37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신설</li> </ul>

## 2) 방재시설

###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가	유수지	저류시설	신관동 244 일원	-	증) 4,374	4,374	-	도로 (1,086㎡), 주차장 (4,374㎡) 중복결정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수지(저류시설) 신설</li> <li>- 면적 : 4,37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들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수지(저류시설) 신설</li> </ul>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 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130-17 외 3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 장부 주소 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516-4, 516-19, 516-20, 516-28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리로 130-17	2020 1102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665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80-71 (월송동)	2020 1102	신규	2010 0202	지역특성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11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654	2020 1102	신규	2010 0112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선 군묘가 있어 송선군로라 부여	
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62-12, 362-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383-1	2020 1102	신규	2010 0112	인근에 영규대사묘가 있어 영규대사로로 부여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76-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37-11	2020 1102	신규	2010 0112	유구읍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마곡사로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89-2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646-47	2020 1102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209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7-9 (상왕동)	2020 1102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 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206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7-57 (상왕동)	2020 1102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 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48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가마울길 74	2020 1102	신규	2010 0112	마을의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407-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룡말길 143	2020 1102	신규	2010 0112	지형이 마치 구렁이처럼 생겼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 장부 주소 전환 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20-34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길 13 (금성동)	2020 1102	신규	2010 0112	지역특성 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6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늦점1길 190	2020 1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영정리 52-6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마새길 17-57	2020 1102	신규	2010 0112	마을이 골짜기에 있어서 옛날에 여기를 오르다 보면 말도 숨이 차서 꼭 물을 마시고 쉬게 하였다는 마을 이어 마수라고 부르던 것이 마새로 변했다 하여 마새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59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길 86	2020 1102	신규	2010 0112	문금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문금길로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394-2	충청남도 공주시 버드나무2길 11 (옥룡동)	2020 1102	신규	2010 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1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19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부영골길 7-10	2020 1102	신규	2010 0112	부영이가 점을 쳐주는 마을이라 하여 부영골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56-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수작골길 43-2	2020 1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8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101-1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80	2020 1102	신규	2010 0202	도로의 끝지점에 연수원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연수원을 가는 길이라 인식, 연수원길로 부여	
1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56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방축 골길 73-43	2020 1102	신규	2010 0202	예전 방축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다하여 방축골길로 부여 후 행정 구역 명칭 첨가	
20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165	충청남도 공주시 원골길 26-46 (주미동)	2020 1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 장부 주소 전환 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206-5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 48 (태봉동)	2020 1102	신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267-1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길 125 (월미동)	2020 1102	신규	2010 0112	월미동을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 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월미동길 이라 부여	
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62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월산길 215	2020 1102	신규	2010 0112	월산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복합 활용	
2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629-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월산길 217	2020 1102	신규	2010 0112	월산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복합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629-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월산길 221	2020 1102	신규	2010 0112	월산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복합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629-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월산길 223	2020 1102	신규	2010 0112	월산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복합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397-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조정길 7-18	2020 1102	신규	2010 0112	옛 길 이름이 조정길이었다는 유래를 반영	
28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쌍대리 74, 7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토끼울길 105-29	2020 1102	신규	2010 0112	옛날에 산토끼가 많이 살았으며 옥토망월형의 명당이 있는 마을 이라 하여 토끼울길이라 부여	
2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1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던길 10-3	2020 1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3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던길 28-16	2020 1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교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 장부 주소 전환 계획
3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9-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던길 41	2020 1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3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114-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2길 26-12	2020 1102	신규	2010 0112	신소의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 번호 방식 혼합 활용	
3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67-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솔바람길 35-14	2020 1102	신규	2015 0825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의한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도로명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별당마루길 35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 적 장 부 주 소 전 환 계 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계룡면 양화리 8-7	계룡면 양화리 8-7	계룡면 별당마루길 35-26	계룡면 별당마루길35	10.13	기초번호미존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정안면 운궁리 241-11	정안면 운궁리 241-11.10.14	정안면 활원길 48-12	정안면 활원길 48-10	10.15	건물번호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다라울중대길 177 외 5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계룡면 기산리 906	계룡면 다라울중대길 17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	계룡면 내흥리 573	계룡면 왕흥장약로 436-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	계룡면 기산리 898	계룡면 다라울중대길 172-10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	계룡면 월곡리 산 5-1	계룡면 음정길 41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	계룡면 경천리 108-2	계룡면 성밀길 25-14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6	공주시 반죽동9-6	공주시 무령로 19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7	탄천면 남산리 347	탄천면 금백로1076-61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8	탄천면 남산리 347-1	탄천면 금백로1076-6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9	탄천면 남산리 816	탄천면 금백로1076-32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0	탄천면 남산리 301-2	탄천면 금백로1076-1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1	탄천면 남산리 산 130	탄천면 금백로1079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2	탄천면 남산리 산 130	탄천면 금백로1085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3	탄천면 남산리 산 51	탄천면 금백로1224-14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4	탄천면 남산리 597	탄천면 남산홍성길24-1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5	탄천면 성리 33-6	탄천면 밤골길8-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6	탄천면 분강리 124-1	탄천면 분창길1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7	탄천면 남산리 467-2	탄천면 산골2길49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8	탄천면 송학리 405-2	탄천면 소라실2길52-5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9	탄천면 남산리 736	탄천면 안골길25-3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0	탄천면 가척리 95	탄천면 와촌길9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1	탄천면 견동리 산 18-1	탄천면 용천길53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2	탄천면 견동리 산 7-2	탄천면 임천고개로258-1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3	탄천면 광명리 374	탄천면 절골길62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4	탄천면 가척리 산 31-1	탄천면 청림1길13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5	탄천면 삼각리 산 47-17	탄천면 큰선덕길21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6	탄천면 삼각리 594	탄천면 큰선덕길57-38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7	탄천면 장선리 504-1	탄천면 평촌동촌길9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8	탄천면 가척리 709-5	탄천면 호두나무길30-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9	탄천면 가척리 산 82-4	탄천면 호두나무길30-5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0	이인면 신영리 412	이인면 구례실길37-9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31	이인면 주봉리 282	이인면 별바위길23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2	이인면 신영리 135-8	이인면 와룡길25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3	이인면 신영리 산 23	이인면 와룡길275-1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4	이인면 용성리 215-1	이인면 용성길81-3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5	이인면 신영리 78	이인면 용수막길37-13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6	이인면 신영리 456-5	이인면장선버들길65-31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7	공주시 신기동 565	공주시 사갈터길 24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8	공주시 옥룡동 산 5-1	공주시 창벽로18-9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9	공주시 금성동 136-4	공주시 송산리길45-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0	공주시 금성동 136-3	공주시 송산리길45-4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1	계룡면 하대리 806-2	계룡면 감바위길19-12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2	계룡면 상성리 산 8-1	계룡면 구부내로759-6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3	계룡면 상성리 산 1-9	계룡면 구부내로845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4	계룡면 화현리 235-3	계룡면 구부내로887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5	계룡면 화현리 235-5	계룡면 구부내로889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46	계룡면 금대리 368-1	계룡면 금띠길52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7	계룡면 양화리 210	계룡면 능산길11-10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8	계룡면 기산리 883-1	계룡면 다라울중대길164-2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9	계룡면 하대리 519	계룡면 대장길13-12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0	계룡면 하대리 316-2	계룡면 대장길70-4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1	계룡면 양화리 산 19-1	계룡면 안쇠실길22-8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2	계룡면 화현리 178-2	계룡면 영규대사로90-8	11.2	2020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3	공주시 신관동 586-4	공주시 번영1로 27	11.2	허가과-59070(20.10.16) 건물 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54	계룡면하대리341-2	계룡면신대장길7	11.2	허가과-60093(20.10.20) 건물 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55	공주시 신관동 553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자전거길 20	11.2	자전거길도로명변경으로인한 건물번호폐지
56	공주시신관동553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자전거길 50	11.2	자전거길도로명변경으로인한 건물번호폐지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주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공 주 시 장

1. 처분대상 : 공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단, 아래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

- (장소·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 < 과태료 부과 장소 및 대상 >

부과 장소	부과 대상
<b>집합제한 시설</b> ※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변동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b>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b>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13종>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종교시설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b>버스·택시</b>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b>운수종사자·이용자</b>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 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b>집회·시위장</b>	다중이 군집하는 <b>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b>의료기관</b>	<b>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b>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b>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b>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b>종사자</b>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4. 처분사유 : 공주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3.(화)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단,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30일 부여(~2020. 11. 12.까지)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나. 과태료 부과권자 : 공주시장

다. 단속내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li> <li>•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li> <li>•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b>의학적 소견</b>을 가진 사람</li> </ul>
예외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li> <li>•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li> <li>• 세수, 양치 등 <b>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b></li> <li>•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b>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b></li> <li>• 얼굴을 보여야 하는 <b>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b></li> <li>• <b>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b></li> <li>• <b>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b></li> <li>• 본인 확인을 위한 <b>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b></li> </ul>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7.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8.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0:00부터

9. 처분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1.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 공 주 시 장

#### 가. 도로구역의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당 초	시 도	제5호	검상~ 발양	충남 공주시	155,478㎡	검상동	이인면 발양리		15.5
변 경	시 도	제5호	검상~ 발양	충남 공주시	170,219㎡	검상동	이인면 발양리		15.5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다.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5월 ~ 2021년 12월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공주시장(지역경제과장)
- 2)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바.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1)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2) 열람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도로과(☎041-840-8387)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및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입면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1	당초	검상동	322-6	답	296	2	공	공주시				
	변경		322-6	답	296	296	공	공주시				
2	당초	검상동	322-5	답	50	16	공	공주시				
	변경		322-5	답	50	50	공	공주시				
3	당초	검상동	322-4	답	139	139	공	공주시				
	변경		322-4	답	139	139	공	공주시				
4	당초	검상동	720	도	152	145	국	국토교통부				
	변경		720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5	당초	검상동	720-3	도	193	133	공	공주시				
	변경		720-3	도	193	193	공	공주시				
6	당초	검상동	720-2	임	125	1	공	공주시				
	변경		720-2	임	125	125	공	공주시				
7	당초	검상동	324	답	2,858	0	공	공주시				
	변경		324	답	2,858	2,858	공	공주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8	당초	검상동	324-2	답	26	0	공	공주시				
	변경		324-2	답	26	26	공	공주시				
9	당초	검상동	324-3	답	34	24	공	공주시				
	변경		324-3	답	34	34	공	공주시				
10	당초	검상동	324-4	답	62	24	공	공주시				
	변경		324-4	답	62	62	공	공주시				
11	당초	검상동	720-13	도	7	7	공	공주시				
	변경		720-13	도	7	7	공	공주시				
12	당초	검상동	324-1	답	215	157	공	공주시				
	변경		324-1	답	215	215	공	공주시				
13	당초	검상동	720-10	도	7	7	국	국토교통부				
	변경		720-10	도	7	1	국	국토교통부				
14	당초	검상동	324-5	답	127	0	공	공주시				
	변경		324-5	답	127	127	공	공주시				
15	당초	검상동	325-6	답	181	0	공	공주시				
	변경		325-6	답	181	181	공	공주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6	당초	검상동	325	답	7	7	공	공주시				
	변경		325	답	7	2,422	공	공주시				
17	당초	검상동	325-8	답	669	0	공	공주시				
	변경		325-8	답	669	669	공	공주시				
18	당초	검상동	산7	임	502,162	0	공	공주시				
	변경		산7	임	502,162	3,562	공	공주시				
19	당초	검상동	325-9	답	313	4	공	공주시				
	변경		325-9	답	313	313	공	공주시				
20	당초	검상동	720-11	도	104	96	국	국토교통부				
	변경		720-11	도	104	104	국	국토교통부				
21	당초	검상동	325-4	답	189	158	공	공주시				
	변경		325-4	답	189	189	공	공주시				
22	당초	검상동	720-6	임	238	18	공	공주시				
	변경		720-6	임	238	238	공	공주시				
23	당초	검상동	720-1	도	768	511	공	공주시				
	변경		720-1	도	768	768	공	공주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24	당초	검상동	720-5	임	375	0	공	공주시				
	변경		720-5	임	375	366	공	공주시				
25	당초	검상동	산7-26	임	5,325	0	공	공주시				
	변경		산7-26	임	5,325	1,774	공	공주시				
26	당초	검상동	325-7	전	284	12	공	공주시				
	변경		325-7	전	284	216	공	공주시				
27	당초	검상동	325-5	전	84	84	강영 규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60번길 43-9, 이동402호 (쌍령동 선경파크타운)				
	변경		325-5	전	84	84	강영 규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60번길 43-9, 이동402호 (쌍령동 선경파크타운)				
28	당초	검상동	322-1	천	916	0	국	국토교통부				
	변경		322-1	천	916	40	국	국토교통부				
29	당초	검상동	322-3	천	6	6	국	국토교통부				
	변경		322-3	천	6	6	국	국토교통부				
30	당초	검상동	산7-27	임	1	1	공	공주시				
	변경		산7-27	임	1	1	공	공주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31	당초	검상동	323-2	답	75	4	공	공주시				
	변경		323-2	답	75	57	공	공주시				
32	당초	검상동	702-22	천	18,946	1,655	국	국토교통부				
	변경		702-22	천	18,946	1,843	국	국토교통부				
33	당초	검상동	718-5	장	5	5	공	공주시				
	변경		718-5	장	5	4	공	공주시				
34	당초	검상동	718-3	장	133	121	공	공주시				
	변경		718-3	장	133	1	공	공주시				
35	당초	검상동	712-6	장	167	6	공	공주시				
	변경		712-6	장	167	30	공	공주시				
36	당초	검상동	728-6	장	130.6	0	공	공주시				
	변경		728-6	장	130.6	1	공	공주시				
37	당초	검상동	728-7	장	520.7	0	공	공주시				
	변경		728-7	장	520.7	25	공	공주시				
38	당초	검상동	미지번			0						
	변경		미지번			31						

연번 내역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39	당초	검상동	712-3	도	1,058	8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2-3	도	1,058	423	국	국토교통부				
40	당초	검상동	728-10	장	37.9	0	공	공주시				
	변경		728-10	장	37.9	37.9	공	공주시				
41	당초	검상동	730	도	25,581.6	0	공	공주시				
	변경		730	도	25,581.6	196	공	공주시				
42	당초	이인면 만수리	115-1	임	2,667	996	공	공주시				
	변경		115-1	임	2,667	1,150	공	공주시				
43	당초	이인면 만수리	509	도	1,349	485	국	국토교통부				
	변경		509	도	1,349	485	국	국토교통부				
44	당초	이인면 만수리	116-3	전	110	103	공	공주시				
	변경		116-3	전	110	103	공	공주시				
45	당초	이인면 만수리	116-5	임	191	16	공	공주시				
	변경		116-5	임	191	82	공	공주시				
46	당초	이인면 만수리	116	전	188	57	공	공주시				
	변경		116	전	188	62	공	공주시				